

나) 호봉관리

● 정신건강 증진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

- 10할 인정 : 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) 근무경력, 정신 재활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(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) 근무경력, 군의무복무 경력(무관후보생 경력 제외), 보건복지콜센터 위기대응상담팀(정신건강 상담 담당자)
- 8할 인정 : 정신의료기관,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요양시설 근무 경력, 노숙인·부랑인시설, 중독(알코올, 도박, 인터넷, 마약 등)관련 기관 근무경력
- 6할 인정 : 보건소,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, 간호사·사회복지사·임상심리사로서 병·의원 근무경력
-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,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 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
 - *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'사회복지사업법' 제2조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 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
 - * 근무경력은 '정신건강 관련 업무'에 종사한 경우에 인정하며, '정신건강 관련 업무'는 각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

다) 직급별 업무 및 역할

(1) 센터장

● 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자

- 수탁기관을 대표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
- 사업계획 수립과 자체 사업 평가 지도 및 조정
-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재

● 교육 및 수퍼비전

- 센터 교육 체계 구축과 지도
- 월 1회 이상의 심층적 사례검토 및 수퍼비전 주관
- 팀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 주관
- 팀 역량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체계 구축 및 지도

●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 서비스 체계의 중심적 축으로서의 기능 수행

- 지역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
- 지역 중독관련기관 및 정신건강 네트워크
- 대외적 대표 업무 수행(회의 참석 등)

나) 호봉관리

● 근무연수(호봉) 산정

-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(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상근 근무기간이 중간에 있을 경우 비상근 근무기간을 제외한 상근기간의 연속성 인정)
-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,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

〈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〉

구분	인정범위
○ 10할 인정	- 타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), 자살예방센터 근무경력, 군복무경력(무관후보생경력 제외), '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' 수행 응급의료기관(사례관리자), 보건복지콜센터 위기대응상담팀(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),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(과) 근무경력
○ 8할 인정	- 정신의료기관,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, 정신요양 시설 근무경력, 노숙인·부랑인시설 근무경력,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관련 기관에서 정신보건 업무에 근무한 경력
○ 6할 인정	-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(보건소,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, 간호사·사회복지사·임상심리사로서 학교, 병·의원,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요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)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

- 1) '사회복지시설'이라 함은 당해년도 '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'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
- 2) '학교'라 함은 '고등교육법' 의해 설립된 국·공립학교 및 사립학교
- 3) 상기의 '아동청소년 관련기관' 및 '정신건강 관련업무' 해당여부는 각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

다) 직급별 업무 및 역할

(1) 센터장 및 상근 부센터장

(가) 센터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자

- 수탁기관을 대표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
- 사업계획 수립과 자체 사업 평가 지도 및 조정
-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재